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9. 1.

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 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, 지역 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
2. 청취내용

가. 건 명: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

나. 위 치: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

다. 주요내용

-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정비
- 기 결정된 취약지구 재검토 및 신규 취약지구 지정
-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재검토
- 군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의 재검토

3. 청취경위

가. 2020. 12. 23.: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

나. 2022. 12. 29.: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

(당동지구·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)

다. 2023. 4. 24. ~ 5. 12.: 주민 열람공고

라. 2023. 9. : 군의회 의견 청취

4. 근거법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

붙임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1부. 끝.